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242
----------	-----

제안년월일 : 2004. 9. 20.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정부가 지난해 말 제정 공포한 백두대간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 요인이 되므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법 폐지를 건의하기 위함

2. 제안이유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하는데 우리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3개 국립공원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되어 현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같은 현실에서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의 74,394헥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규제정책으로 이는 충북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초래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지역개발 및 사유 재산권을 보호코자 함.

3. 참고사항

“ 없음 ”

백두대간보호법 폐지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림청장)님께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국가경제의 활력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50만 충청도민들은 정부가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말 제정 공포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 시행을 위해 금번 사전절차에 착수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80년도 건설된 대청댐과 85년도 완공된 충주댐으로 인하여 6개시군 26개 읍면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법적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와 갖가지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으며, 속리산을 비롯한 3개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5개시군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해가며 생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또다시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의 74,394헥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은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면서도 주능선이 아닌 일반 수계지역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산지와 인접한 농경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포함되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하며 백두대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중부내륙관광권의 개발은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사업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그때마다 주민들의 저항이 표출되어 여러 가지로 난관에 봉착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댐건설로 타지역 보다도 현저히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이 이루 형언할수조차 없는 데에도 이지역의 주민들을 이중으로 제

약하겠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안겨줄 뿐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처사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사안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150만 충청도민과 함께 지역균형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암초가 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